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자립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종류를 정함.
-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방법을 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